

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심기보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“민주화운동”의 정의(안 제2조)

○ 기념사업(안 제4조)

-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
- 충청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·계승사업
-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

○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법인·단체 또는 교육,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 지원 (안 제5조)

## 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으며,
- 제주 4.3 항쟁, 5.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과 충청북도는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있으나 6.10 항쟁 등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충청북도 또한 동참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,
- 충청북도 내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민주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.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에서도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여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. 끝.